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0
----------	-----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12일

발 의 자 : 강민하 의원

찬 성 자 : 이진삼·김양희·박경희 의원
(3명)

1. 제안이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람하지 않은 사람은 관람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야간개장을 할 수 있도록 관람시간·매표시간 규정을 정비함. 아울러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서 운영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무료 관람 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대문구 구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등 관람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환불 및 관람시간·매표시간 조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5조)

나.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항)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반장
- 서대문구 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 북한이탈주민
-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 기부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 언론보도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출입기자

다. 장애인과 동행하여 관람료를 면제받는 보호자 1명에 대한 규정 변경
(안 제7조제1항제5목)

- 현행: 동행하는 보호자
- 개정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관람료 감면비율 다양화
(안 제7조제1항~제2항)

- 현행: 100% 면제
- 개정안: 100%, 50% 면제

마. 제휴 할인 규정 신설 (안 제7조제3항)

바. 필요시 기념행사 기간 등 일정 기간 무료 관람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1~12호, 제4항)

- 적용례: 3.1절 기념행사 기간, 광복절 기념행사 기간 등

사. 유사성, 빈도 등을 고려하여 항목 순서를 조정하고 법체계에 맞게
접속사 등 용어 정비 (안 제7조)

아. 안 제7조 조문과 중복되는 별표1 면제란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제3조, 제9조의3, 제25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 제2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제3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국경일법)」 제2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기념일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관계부서: 문화체육과
- 2) 입법예고: 2024. 4. 16. ~ 2024. 4.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하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는 역사관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여 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야간 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람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1. 65세 이상 노인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4.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반장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와 가족
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
9. 기부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다. 언론보도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출입기자
11. 3·1절 또는 3·1절 기념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사람
12. 광복절 또는 광복절 기념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사람
13. 어린이날에 방문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14. 서대문구 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2.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제휴 할인 등을 통해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기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여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또는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의 면제란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람 및 관람료) ① (생략)</p> <p>② 역사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한 후 관람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u>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u><신 설></u></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관람 및 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한다.</p> <p>③ <u>징수한 관람료는 역사관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여 줄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u>구청장은 야간 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제6조(매표)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6조(매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람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u></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u></p>

1. 국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를 면제한다.

1. 65세 이상 노인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4.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반장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 특정기념일에 관람하는 사람
 - 가. 3·1절(전체 관람객)
 - 나. 어린이날(12세 이하의 어린이)
 - 다. 광복절(전체 관람객)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삭제

족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와 가족

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

9. 기부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가.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언론보도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출입기자

11. 3·1절 또는 3·1절 기념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사람

12. 광복절 또는 광복절 기념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사람

13. 어린이날에 방문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14. 서대문구 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2.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제휴 할인 등을 통해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기

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또는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p>				<p>[별표 1]</p> <p>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p>			
구 분	대 상	요 금		구 분	대 상	요 금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 른	- 19세 이상 ~ 64세 이하 인 사람	3,000원	2,400원	어 른	- 19세 이상 ~ 64세 이하 인 사람	3,000원	2,400원
청 소 년 및 군인	- 13세 이상 ~ 18세 이하 인 사람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 학생 포함)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 의 군인 (전투경찰, 순경, 경비 교도원을 포함)	1,500원	1,200원	청 소 년 및 군인	- 13세 이상 ~ 18세 이하 인 사람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 학생 포함)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 의 군인 (전투경찰, 순경, 경비 교도원을 포함)	1,500원	1,200원
어 린 이	- 7세 이상 ~ 12세 이하 인 사람 (초등학교 학생 포함)	1,000원	800원	어 린 이	- 7세 이상 ~ 12세 이하 인 사람 (초등학교 학생 포함)	1,000원	800원
면 제	-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 행자, 6세 이하의 어린 이,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동행 보호자 1 명),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유족증 소지자), 상이등급 1급일 경우 보조자 1명						

관계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

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

제2조(구민의 날) 매년 11월 3일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국경일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기념일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방 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순직의무군경 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21	아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아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 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파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4	5·18민주화운 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5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6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7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8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9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30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호국영령의 명복을 받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1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2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3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4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5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6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7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38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39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40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1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2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3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 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4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45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6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47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산 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48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49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국가보훈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50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1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2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3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4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 자원부·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비고

-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 제54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